

석 사 학 위 논 문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에 관한 연구

-저작권asset권을 중심으로-

2013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백 연 주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정경희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에 관한 연구
-저작권재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aised Recognition of Copyright among Elementary
School Library Staffs
- With a focus on author's property right -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백 연 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정경희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에 관한 연구
-저작권재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aised Recognition of Copyright among Elementary
School Library Staffs
- With a focus on author's property right -

위 논문을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백 연 주

백연주의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에 관한 연구 -저작권재산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전공
백 연 주

본 연구는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작권 교육 및 연수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재산권과 그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 및 저작권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재산권에 중점을 두어 저작권의 개념과 관련 규정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의 저작권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2013년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로 선정된 156개의 서울시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였다. 설문의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즉 저작권재산권 및 저작권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 저작권재산권과 관련된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경험여부 및 저작권 교육에 대한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저작권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을 교사는 공연권, 전시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두 집단 모두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교사는 복제권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저작권재산권 제한 규정 중 제29조와 관련

해서 두 집단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구연동화를 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나 구연동화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다. 제31조와 관련해서는 두 그룹 모두 디지털자료 취급관련사항에 대한 내용 및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에 대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제29조와 관련해서 사서, 자원봉사자의 구연동화와 도서관내 영화상영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교사는 제25조와 제29조와 관련한 영화상영, 저작물 일부복사배포, 구연동화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수업을 통해, 교사는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을 하였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은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권법 제25조, 제29조, 제31조 등 업무와 관련된 규정 중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영상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물을 새로운 매체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 독후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외부에 전시하는 경우 등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저작권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자료의 관리와 자료의 복사 및 대출, 영상자료 상영, 매체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협력수업 등 다른 관중의 도서관 담당자와는 달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직접 또는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 전문교육은 방학 중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향후 대학(원)에서의 문헌정보학 전공자 대상의 교육과정에 저작권 관련 교육 내용을 확대하면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작권 안내 정보원 개발에 있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도서관 이용

자에게 저작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저작권 인지도 조사에서 낮은 인지도로 보였던 내용,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내용, 교사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 저작권법 제31조와 관련된 내용 등의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저작권 매뉴얼을 개발해야 된다. 또한 자유롭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저작권 자료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은 저작권 관련 고민이 생겼을 때 인터넷을 통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의 연구결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연수의 기회 확대와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책자 및 사례집의 개발 등을 통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기대한다.

【주요어】 초등학교도서관, 저작권, 학교도서관 사서의 저작권 교육, 저작권 교육,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

목 차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내용 및 방법	2
1.3 선행연구	3
II. 이론적 배경	6
2.1 저작자의 권리	6
2.2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14
2.3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재산권 제한규정	20
2.4 저작권 교육현황	28
III.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의 저작권재산권 인지도 현황	32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2
3.2 분석결과	34
IV. 문제점 분석 및 제언	65
4.1 연구결과 요약	65
4.2 문제점 분석	69
4.3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 방안	70
V. 결론	76

【참고문헌】	80
ABSTRACT	96

【 표 목 차 】

〈표 2-1〉 저작권의 구성	6
〈표 2-2〉 저작인격권의 종류	7
〈표 2-3〉 저작재산권의 종류	10
〈표 2-4〉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교육과정	31
〈표 3-1〉 설문지의 구성	34
〈표 3-2〉 설문응답자의 특성	35
〈표 3-3〉 저작재산권 및 이용허락	36
〈표 3-4〉 저작권 인지도	42
〈표 3-5〉 저작권 인지경로	42
〈표 3-6〉 저작권 고민유형	43
〈표 3-7〉 저작권 문제 해결방법	44
〈표 3-8〉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45
〈표 3-9〉 저작권 교육시기	45
〈표 3-10〉 저작권 교육방법	46
〈표 3-11〉 저작권 교육희망기관	46
〈표 3-12〉 설문응답자의 특성	48
〈표 3-13〉 저작재산권 및 이용허락	49
〈표 3-14〉 저작권 인지도	53
〈표 3-15〉 저작권 인지경로	54
〈표 3-16〉 저작권 고민유형	54
〈표 3-17〉 저작권 문제 해결방법	55
〈표 3-18〉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56
〈표 3-19〉 저작권 교육방법	56
〈표 4-1〉 통계분석용 설문문항	62
〈표 4-2〉 업무경험과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규정 간의 관계	63
〈표 4-3〉 저작권 교육경험에 따른 저작권 인지도 차이	64

【 그림 목 차 】

〈그림 3-1〉 학교교육 목적 등예의 이용(제25조)	37
〈그림 3-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38
〈그림 3-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39
〈그림 3-4〉 기타 제한규정(제32조, 제28조, 제35조의3)	40
〈그림 3-5〉 저작권 관련 업무경험	41
〈그림 3-6〉 학교교육 목적 등예의 이용(제25조)	50
〈그림 3-7〉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기타 제한규정	51
〈그림 3-8〉 저작권 관련 업무경험	52

【 부 록 목 차 】

〈부록 1〉 설문지	85
------------------	----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자료의 관리와 자료의 복사 및 대출, 영상자료 상영, 매체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협력수업 등 다른 관종의 도서관 담당자와는 달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직접 또는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와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이 사용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보다 적극적인 도서관서비스나 교육을 위하여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저작권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요구하지만 교육목적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는 저작권을 제한하여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제한 규정을 활용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합법적인 서비스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작권법 중 저작권재산권과 그 제한 규정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도서관서비스와 독서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저작권 교육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이 있다. 그러나 교사나 학생들의 저작권 교육에 비해 그 기회가 훨씬 적다. 급변하는 기술의 발달과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사례,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미루어 볼 때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교사의 특성화된 저작권 교육과 학생의 다양한 저작권 교육의 여건과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도 그 특징에 맞는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위한 저작권 관련 사례집이나 지침서도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의 경우에는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저작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쉽게 익히는 이야기 속 학교 저작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등의 책자를 통해 저작권의 기본개념과 저작권 침해사례, 학교수업과 관련된 저작권 등을 통해 저작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 지침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에는 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지침들이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참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저작권 인지도와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 및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 및 저작권 교육현황을 조사하였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은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저작권 인지도도 함께 조사하고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인지도와 비교해 보았다. 그 이유는 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주된 이용자그룹의 하나이므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교사에게 자료제공서비스와 더불어 그 이용범위와 관련한 저작권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현황파악과 저작권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이용자를 위한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그들의 업무와 관련한 저작권 관련 규정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서비스대상 그룹인 교사들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는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저작권의 내용 중 특히 학교도서관과 관련이 높은 저작재산권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였다. 학교도서관에는 수많은 저작자들에 의한 다양한 저작물들이 있다. 따라서 저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동시에 저작권의 제한 규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이용자에게 효과적인 저작권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재산권과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및 저작권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는 저작재산권과 그 제한 규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의 저작권 교육 현황 및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셋째, 저작권 관련 업무경험과 교육경험은 저작권 인지도와 관련성이 있는가?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저작재산권과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규정과 학교도서관 담당자 및 교사와 학생의 저작권 교육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기술통계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업무경험과 저작권 인지도의 관계 및 교육경험과 인지도의 관계는 두 집단에 공통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심으로 일원배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1.3 선행연구

그동안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사서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사서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민화(2006), 이수진(2007), 이진숙(2004) 등이 있다. 이민화(2006)는 학교도서관에서 저작권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이용자대상의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학교도서관 담당자중 교사

들의 저작권 교육경험은 없었고 저작권 교육경험이 있는 사서들은 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워 학생들을 상대로 저작권교육을 실시한 곳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이민화는 저작권 교육의 문제점을 사서의 인식부족, 수업의 부재로 보고 개선안으로 학교관계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저작권교육시간의 배정, 교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수진(2007)은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법의 인식은 높았으나 개정된 저작권법과 저작물의 이용과 보호기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았다. 그리고 이용자의 저작물복제나 저작물을 이용한 도서관 행사 등에는 인식이 높았고 보상금의 지급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인식은 낮게 나왔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 교육경험이 낮았으며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다. 제언에는 문헌정보학과 정규과정의 저작권 교육 및 저작권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보상금제도’에 대한 교육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 서적 및 해설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진숙(2004)은 디지털 원문 자료를 중심으로 이용자, 저자, 사서들의 이용실태와 법규상 저촉성에 대한 관심을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도서관내에서의 저작권법의 면책사항의 이용자, 저자, 사서들에게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홍재현(2007)은 2006년 사서 1급 자격연수 과정에 참여한 사서교사 52명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의 이해와 학교도서관’이라는 저작권 강의를 하였다. 강의 후에 연수 과정 이전과 이후의 사서교사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인지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대학 및 자격연수 과정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얻었다.

교사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에는 김덕정(2011), 김자미 외(2011), 한선관 외(2011) 등의 연구가 있다. 김덕정(2011)의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의식 및 태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저작권 교육을 경험

한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식은 변화되었으나, 저작권 의식이나 행동변화는 없었다. 이는 앞으로 실시되어야 할 저작권 교육은 지식과 정보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습득한 지식이나 정보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자미 외(2011)는 349명의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정보 활용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교육을 받은 경험 보다는 직접 교육용콘텐츠를 제작해 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저작권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강의보다 교육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더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선관 외(2011)는 정보영재 교사의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정보영재 지도교사와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지식과 태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정보영재 지도교사가 일반교사보다 ICT소양능력 및 태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정보영재 지도교사와 일반교사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영재교사 대상의 저작권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정보영재 교사들을 위한 단기 저작권 교육프로그램과 장기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2.1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copyright)이란 시, 소설, 음악,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해 주는 권리를 말하고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으로 구성된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지분권으로는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권(제22조)이 있다(표2-1 참고).

〈표2-1〉 저작권의 구성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2.1.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오승종, 2012)를 말한다. 저작인격권의 성질은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소멸되는 일신에 전속된 권리를 가진다(제14조 제1항).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11조~제13조에 걸쳐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표2-2 참고).

〈표2-2〉 저작인격권의 종류

종류	내용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작품을 최초로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자신의 허락 없는 공표를 금지할 권리다. 공표는 저작물의 출판, 인터넷 게재, 낭독·낭송·가창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이름을 빼거나 실명을 이명으로 바꾸거나 필명을 실명으로 바꾸는 것 등을 금지할 권리다.
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내용·형식 및 제호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다.

2.1.1.1 공표권

공표권(제11조)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제2조 제25호).” 저작자가 최초로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을 공표하면 공표권의 침해가 된다.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을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거나 양도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미술·사진·건축 저작물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한 경우는 원본의 전시에 의해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저작자가 미공표저작물을 저작권법 제31조에 해당하는 도서관 등에 기증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공표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 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2.1.1.2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름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성명을 표시할 경우 실명이나 필명, 이명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표기한 이름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배경음악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명표시를 생략한다.

제12조(성명표시권)

-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1.3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를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저작물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 저작물의 일부를 삭제하여 방송하는 경우, 저작물의 제목을 빼거나 바꾸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동일성유지권의 지나친 보호는 저작물 이용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용목적 및 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동일성유지권 예외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학교교육 목적상 어려운 한자(漢字)를 대상 학생의 수준에 맞게 쉬운 우리말로 고치거나 영어 교과서에 있어서 학년에 따라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바꾸는 등(오승중, 2012)의 경우가 해당된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2.1.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지분권은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에 걸쳐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물작성

권(제22조)이 있다. 아래의 (표2-3)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표2-3〉 저작재산권의 종류

종류	내용	예시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16조)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을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복제도 포함된다.”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보존용으로 복사하는 경우, 혹은 그 자료를 디지털로 제작하는 행위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17조)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에서 사서가 학생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행위, 도서관에서 문화활동으로 DVD를 상영하는 행위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18조)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저작물을 올려 이용자가 그것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법 제19조) 전시란 “저작물이 담겨져 있는 물체를 공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이나 사진을 전시하는 행위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0조) 배포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행위는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여권	제20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21조) 대여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원 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돌려받은 것을 전제로 빌려줄 권리를 말하며 자신의 허락 없는 대여를 금지할 권리다.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 대여점에서 판매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빌려주는 행위,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은 대여권이 적용되지 않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법 제22조)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을 말하고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하여 원서의 내용을 번역 서비스 하는 행위

2.1.2.1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제16조). 복제권은 저작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타인이 복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배타적 권리다.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제2조 제22호).”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기계적·전자적·화학적 방법 또는 손으로 베끼는 것도 포함된다(오승중, 2012). 따라서 논문이나 소설 등을 복사·인쇄한다든지 그림이나 조각을 사진촬영 한다든지 강의를 녹음한다든지, 음악을 음반에 취입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한다. 또한 복제의 개념에 디지털 복제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 담당자가 소장 자료를 복사기 등으로 복제하는 것은 물론 그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것, 도서관내의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하드디스크나 디스켓,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CD-ROM 등에 저장하는 것, 그러한 디지털 형태의 소장 자료를 출력하는 행위는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2.1.2.2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제17조). 공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할 수 있고, 자신의 허락 없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제2조 제3호).” 공연에 해당하는 유형에는 각본이나 무보 기타 연극적 저작물을 무대위에서 실연시키는 것(상연), 음악저작물을 악기로써 실연하는 것(연주), 음

성으로 실연하는 것(가창), 시·소설·논문 등 주로 어문저작물을 구두로 표현한 것(구연 및 낭독), 영화와 같이 영상화 된 저작물을 영사막이나 기타 물체에 영사하는 것(상영)이 포함된다(홍재현, 2011). 따라서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상영하거나 DVD를 재생시켜 보여주는 행위, 소설을 연극 무대에 올리거나 음악을 연주하거나 그림책을 읽어주는 행위도 공연에 해당한다.

2.1.2.3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제18조). 공중송신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 유·무선을 통하여 송신할 권리를 말하며 자신의 허락 없는 공중송신을 금지할 권리이다.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이 포함된다.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8호).” 지상파방송·유선방송·위성방송·DMB가 해당하며 1대 다수, 일방향성, 동시수신을 특징으로 한다.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제2조 제10호).” 전송권은 1대1, 쌍방향성, 이시송신을 특징으로 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저작물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올린 저작물을 클릭할 때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송신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을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제2조 제11호).” 예를 들면 인터넷방송이나 방송 웹 캐스팅이 해당한다. 최근 학교도서관의 환경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공중송신권과 관련된 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서가 학교홈페이지에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그것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공중송신 중 전송에 해당한다.

2.1.2.4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제19조). 전시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 직접 보여줄 권리를 말하며 자신의 허락 없는 전시를 금지할 권리이다.

전시권은 미술·사진·건축 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 전시란 저작물이 담겨져 있는 물체를 공중에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시의 장소는 화랑·도서관·상점의 진열대·진열장 등과 같이 전시를 위하여 마련된 장소뿐만 아니라,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호텔의 로비, 극장의 복도, 그 밖의 공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오승중, 2012).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미술품전시도 전시권의 적용을 받는다.

2.1.2.5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 배포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공중에 대한 제공을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오승중, 2012).

배포란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3호).” 그러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이것을 ‘권리소진의 원칙’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 한다. 즉 저작권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복제물을 판매한 경우 이후의 건전한 배포는 자유이고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최초의 판매로서 소진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대출하는 행위는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2.1.2.6 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제21조). 대여권은 권리소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즉, 판매용음반이나 프로그램의 경우 최초판매 이후에도 저작권자는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비디오 대여점에서 판매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빌려주는 경우를 말한다.

2.1.2.7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한다(제5조 제1항).” 예를 들어 영어 소설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소설을 각색하거나 연극대본을 영화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이기반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면서 스캐닝 이외의 큰 폭의 색 보정, 체제 및 내용의 편집 등을 가하여 원저작물을 상당히 변형시킨 디지털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홍재현, 2011).

2.2 저작재산권의 제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3조~제37조에 걸쳐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한 정보이용을 위해서 저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이 제23조 내지 제37조의 2까지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먼저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한다. 그리고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한다. 또한 열거된 조항의 경우에는 합당한 요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2.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이 규정은 국가 목적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저작재산권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판결문에는 저작물을 인용의 정도를 넘어서 차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소송자료에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입법 또는 행정 목적의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는 국회의 법률안, 예산안의 심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행하는 조례제정, 정부의 조약체결에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홍재현, 2011). 이러한 복제권의 제한은 외부에 배포할 것을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복제할 수 있는 분량 및 부수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이 규정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저작권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연설은 공중에게 전달되고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행했을 경우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 졌을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이 규정은 언론의 자유 및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이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 때문에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오승종, 2012). 예를 들어 사건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나 보도 장면 중의 미술 작품 등이 보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2.2.4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이 규정은 신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국민에게 원

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용을 허락한 것이다.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5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이 규정은 타인의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소수의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고, 또 그것을 일일이 규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얻게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게 된 것이다(오승중, 201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제하는 저작물이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비영리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판매하기 위한 복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사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위하여 복제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책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 넷째, 복제 부수나 수량은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복사기기를 통해 복제하는 것은 안 된다. 예컨대 대학가 복사점의 복사기를 통해 복사하거나 문구점 등의 복사기를 통해 복사해서는 안 된다(곽덕훈, 2008).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6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나 녹음은 복지정책상의 필요성 등 공공성이 큰 부분이며, 이러한 복제나 녹음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할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고 있는 규정이다. 단 제2항은 ‘어문 저작물’에만 적용된다(오승중, 2012).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7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방송의 현실상 대부분의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녹화나 녹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저작물을 방송하기 위해서 방송사업자가 매번 방송뿐만 아니라 녹음이나 녹화에 대한 허락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진 방송사업자는 방송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허용한다.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8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저작물 등은 다른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가지는 전시권과 원작품의 소유권과의 관계,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의 복제 및 그 이용행위를 어떻게 규율하여야 할 것인지, 초상화나 인물사진 저작물 등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저작자와 위탁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조율하여야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저작권법 제35조에서 미술저작물 등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저작자의 전시권이나 복제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오승중, 2012).

제35조(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상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2.2.9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이 규정은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일반적인 정보 검색의 경우도 복제권 침해가 되어 정보검색의 자유를 제한 받게 된다. 또한 컴퓨터를 통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는 일시적 저장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침해로부터 면책하는 제한 규정이 필요한 것

이고, 그 개정안이 제35조의 2규정이다. 단,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재산권 제한규정

현행 「도서관법」(법률 제8029) 제2조 6호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이란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다. 동법 제38조에는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셋째,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넷째,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다섯째,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여섯째,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이다.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서비스 중 자료의 보존, 이용서비스, 시청각자료의 제작 및 이용제공,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독서교육 등 많은 업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저작권과 일정하게 관련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업무는 저작권재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저작권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첫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료를 복사하거나 디지털 자료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서비스(제25조 2항 및 제31조 1항과 2항)

둘째, 독서교육을 위하여 구연동화를 하는 경우(제29조 1항)

셋째, 도서관이나 교실에서 DVD등의 영상자료를 상영하는 서비스(제29조 2항)

넷째, 학교도서관간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소장 자료를 디지털로 만들어 도서관간 복제·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제31조 3항)

다섯째,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로 복제하는 경우(제31조 1항 2호)

여섯째,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이용자를 위하여 서평자료를 작성하거나(제28조), 교사에게 시험문제 사용하도록 그림, 사진, 수필 등을 복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제32조)등이다.

아래에서 관련된 규정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3.1. 학교교육 목적 등예의 이용

저작권법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다(홍재현, 2011).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와 관련한 규정이 제25조 제1항이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여야 한다. 여기서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한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그리고 ‘지도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따라서 참고서나 자습서, 학원교재, 대학교재 등은 교과용 도서가 아니다(홍재현, 2011).

둘째, 교과용 도서에 게재에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그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공표된 저작물은 번역·편곡 또는 개작할 수 있다. 단, 이용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셋째,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현재 교과용도서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단체로 지정된 곳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다.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교육기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에는 각종 평생교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산업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이 해당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는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는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이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등이 있다.

둘째, 저작물의 사용에 있어서 저작물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의 일부분만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그림이나 사진, 시 등과 같이 수업의 보충 설명을 위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복제 및 배포의 경우는 그 수업을 직접 학생 수만큼만 허용된다. 따라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나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수업 받은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재배포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학교도서관 사서가 일반교사의 요청에 대비하여 미리 필요 이상으로 복제를 해놓고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수업 목적상 필요할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제제출을 위하여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단 수업자료를 학급홈페이지에 올릴 경우에는 교사나 수업을 받는 학생들만 이용하거나 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자료는 저작권 보호에 관한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⑩호 생략

2.3.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제28조). 인용이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에 뒷받침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인용의 요건은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둘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이어야 한다. (오승중, 2012). 셋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부분 인용의 경우 피인용 저작물의 10%이하를 전부 이용할 수 있다.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논문 중에 다른 이의 논문 일부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때는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홍재현, 2011).

2.3.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이 규정은 비영리목적의 공연 및 방송(제29조1항)과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판매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의 공연(제29조2항)에 대한 것이다. 제29조1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이어야 한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따라서 관중에게 공연 대가를 받거나 공연자체가 영리목적일 경우는 안 된다. 또한 가수나 연주자, 사회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무료로 자선공연이나 학교행사에서 연극을 한다거나 노래를 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제29조2항의 요건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말아야 한다. 공연에 대한 대가만 받지 않는다면 특정 단체의 후원을 받아 DVD등을 상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서 관람자들에게 영화를 무료로 틀어준다든지 학교나 도서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또한 공연에 사용되는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은 판매용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유통되는 것 이어야 하며 복제한 것으로 공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곽덕훈, 2008). 그러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이나 공연장등 비영리기관에서 영상저작물을 공연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8호).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4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저작권법 제31조에 의한 도서관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에는 일반 요건과

이용 유형별 요건이 있다(홍재현, 2011). 일반 요건에는 첫째, 도서관 등이 복제 등 이용의 주체일 것이다. 즉, 복제 등의 장소가 도서관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도서관 직원의 관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복제여야 한다. 따라서 도서관 구내에 설치된 전문복사업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여야 한다. 따라서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만 사용하여 복제하여야 한다.

이용 유형별 요건에는 첫째,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복제가 있다. 이것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소장 자료 일부분을 제공하는 경우다. 따라서 이용자의 목적이 단순 오락이나 취미용이어서는 안 된다. 또한 한 번에 저작물의 절반이하의 일부분만 복제하여야 하고 1인 1부에 한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가 있어야 복제를 할 수 있는데 미리 수요를 예측하여 복제물을 비치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타 도서관에서 디지털 형태로 전송 받은 자료도 이용자에게 복제하여 제공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도서관내 컴퓨터로 타 도서관에서 제공받은 디지털 자료를 이용자에게 출력하여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자체보존을 위한 복제이다. 도서관은 자체보존을 위하여 소장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이나 디지털 형태 등으로 복제할 수 있다. 그 부수는 통상 1부로 한정된다. 그러나 자체보존을 위해 복제하려는 자료가 시중에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없다.

셋째, 절판 등으로 구입할 수 없는 자료를 타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시중에서 절판 등의 이유로 구입할 수 없는 자료를 말한다. 이 때 요청받은 도서관은 그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 제공할 수 없다. 아날로그 형태로만 제공이 가능하다.

넷째, 도서관내 디지털 복사이다. 이는 도서관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관내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제는 도서관내에서 열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대상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의 부수만큼만 가능하다.

다섯째,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이다. 도서관은 타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해 소장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를 관간 전송이라 하며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판매용 도서 등만 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된 지 5년 이상 된 판매용 도서 중 시중에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은 디지털화 할 수 없다. 도서관에서의 복제·전송 중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디지털자료의 출력과 관간전송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저작권자인 비매용 저작물의 경우 보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 (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2.3.5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조). 시험문제로 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각종 회사의 입사시험, 운전면허 시험, 기능 검정 등의 시험자체로서의 복제에 한한다. 공표된 저작물에 한하며,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홍재현, 2011). 따라서 출제된 문제를 시험문제집으로 만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제외된다. 따라서 시험문제로서 소설이나 시, 수필, 악보 등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 규정에 해당된다.

2.3.6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대해서 열거만 하고 있을 뿐 포괄적·일반적 규정이 없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에 적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일반조항으로서 ‘공정이용(fair use)’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개정을 통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정이용규정이 도입되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4 저작권 교육현황

2.4.1 사서를 위한 저작권 교육

사서를 위한 저작권 교육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교육이 있다. 그리고 사서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의 저작권 교육은 문헌정보학과 학부교과과정에서 개설된 저작권 관련 강의가 있다.

2.4.1.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사이버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사이버교육과정은 P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무료 교육과정이다. 교육목표는 지적재산권 등 저작권 전반에 대한 이해, 저작권에 대한 도서관에서의 정책사유 등 실제적 사례 연구이다. 교육내용은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의 예시와 유형별 특성,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제한,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 표절과 저작권 침해로 구성되어 있다.

집합교육과정은 14시간 유료교육이다. 저작권과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지식의 습득과 디지털시대의 도서관서비스와 저작권 관리방안에 교육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13).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내용 중 2009~2010년의 저작권 교육은 전자출판의 이해와 최신동향, 오픈소스S/W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전략, DRM:디지털저작권관리, 저작권 제도와 FTA,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등

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 교육은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의 관계,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국내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도서관 면책규정의 내용과 의미, 오픈엑세스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이었다(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과, 2010). 이러한 교육 내용은 앞장에서 언급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들로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 서비스를 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4.1.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은 오프라인교육과 온라인교육이 있다. 오프라인 교육과정에는 저작권문화학교, 저작권아카데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과정이 있다. 저작권문화학교는 예비전문인력양성과정으로 저작권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야 종사자들 대상의 저작권 교육으로 일반과정과 단기과정이 있다. 저작권아카데미는 현장전문인력과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분야별 실무자 대상의 강좌로 산업분야(방송, 음악, 출판, 인터넷), 직무분야(법무종사자, 사서, 법조인, 공무원)로 나뉜다.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등 저작권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강의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교육과정 중 사서과정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개론(저작권법 I, II)·사례연구(case study)포함, 디지털 환경에서의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디지털 도서관 서비스 등),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이해와 절차(도서 관련 저작권의 신탁 관리, 도서관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학술정보자원 공유 및 오픈 액세스와 저작권(CCL을 통한 정보공유 및 활동), 저작권 계약의 실무적 이해(디지털 자료 구입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자원의 저작권 관리) 등이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저작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과정에는 산업종사자, 공무원, 대학생, 일반인 과정이 있으며 사서대상의 온라인 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아카데미, 2013).

한국저작권위원회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저작권 교육이 도서관 업무와 실

질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 또한 학교도서관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았다.

2.4.1.3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의 저작권 교육

2011년을 기준으로 문헌정보학과 학부교과과정에 저작권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비율은 전체 34개 대학 중 12개 대학으로 약 35.3%이다. 과목명은 저작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론, 출판과 저작권, 정보윤리와 저작권, 도서관과 저작권, 정보와 지적재산 등으로 나타났다(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2.4.2 교사를 위한 저작권 교육

교사대상의 저작권 교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오프라인교육(교육연수팀)과 온라인교육(원격교육팀)이 있고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 연수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오프라인 교육은 교사를 위한 저작권 교육이 지정되어져 있다. (표2-4)에서와 같이 교육 과정은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기’, ‘학교 속 저작권 이슈와 사례’, ‘저작권 기초 다지기’, ‘저작권 기초와 실무사례’, ‘저작권 기초와 수업활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가 학교업무에 필요한 내용과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에도 용이하다.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저작권 전문 교원 양성과정이다. 이 과정은 교원 직무연수나 서울시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방문 맞춤형 저작권 교육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온라인교육이 있다.

〈표2-4〉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교육과정

교육대상	과정 명
교원	•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이야기 • 학교 속 저작권 이슈와 사례(모바일) • 저작권 기초 다지기 • 저작권 기초와 실무사례 • 저작권 기초와 수업활용
산업종사자 및 일반인	• 인터넷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출판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음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저작권 개요(공통연수) • 방송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게임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소프트웨어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저작권 개론 • 생활 속 저작권 Q&A(모바일)
청소년 및 학부모	• 저작권과 친구 될래요(초등저학년용) • 저작권과 친구 될래요(초등고학년~중등용) •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초등 학부모용) • 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중등 학부모용)
맞춤형 저작권 교육	수요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온라인 맞춤형 특화과정 제공

Ⅲ.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의 저작권재산권 인지도 현황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1.1 설문지 배포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3년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로 선정된 156개의 서울시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저작권재산권에 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를 설문 대상학교로 선택한 이유는 2013학년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운영 매뉴얼(서울특별시교육청, 2013)의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을 참고하면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실무인력 인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문지 배포와 회수는 2013년 4월 8일부터 5월 4일까지 27일 동안 진행되었다. 총 배포 및 회수 부수는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총 156부를 배포하여 118부를 회수하였고, 교사는 총 312부를 배포하여 121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1차로 모든 설문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회수되지 않은 곳은 2차로 전화 확인 후 전자우편과 웹 설문을 통해 다시 진행하여 회수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의 저작권재산권에 관한 인지도를 각각 파악하고 상호간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저작권 교육 및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과 저작권 인지도와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두 그룹의 인지도는 기술통계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과 저작권 인지도 및 저작권 교육 경험과 인지도는 두 집단에 공통으로 질문한 사항을 중심으로 일원배치분석을 실시하였다.

3.1.2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내용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저작권 인지도에 관한 사항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저작재산권에 관한 설문에는 저작재산권의 7가지 권리 중 학교도서관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저작물 사용 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과 저작재산권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부분에서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즉,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제25조),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제29조),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제31조), 기타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인용(제28조), 공정이용(제35조의3)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에 관한 설문에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가 실제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것은 저작권 인지도와 실제 저작권 규정과 관련된 경험여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셋째, 저작권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의 저작권 교육 경험 여부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고민유무, 희망하는 저작권 교육기간 및 시기 등을 질문하였다.

넷째, 설문응답자의 특성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성별과 연령, 지위, 고용형태 및 근무경력과 교사의 성별, 연령, 근무경력을 내용으로 하였다(표3-1 참고).

〈표3-1〉 설문지의 구성

내용			설문문항 수	
			사서	교사
저작권 인지도	저작권 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물 사용방법	7	7
	저작권 제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2	12
저작권 관련 업무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2	10
저작권 교육		저작권에 대한 인지수준, 저작권 고민유무 및 고민 상황, 저작권 인지경로, 저작권 문제 해결 방법, 저작권 교육 경험 유무 및 기관,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교육의 필요성, 시기, 희망하는 교육방법 및 기관,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이용자 대상 교육경험 여부	22	12
기초적인 사항		성별, 연령, 지위, 고용형태, 근무경력	5	3
전체문항수			68	44

3.2 분석결과

3.2.1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지도 및 교육현황

3.2.1.1 설문응답자의 특성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특성은 (표3-2)와 같다. 성별 구성비를 보면 여성(96.6%)이 대부분이고, 연령별로는 40대(50.8%)가 가장 많고, 30대(28.8%), 50대(11.0%), 20대(9.3%)순으로 나타났다. 지위는 정사서(47.5%)가 가장 많고, 준사서(37.3%), 사서교사(7.6%)순이었다. 이것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도서관 담당자의 92%가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일반초등학교와 비교해 볼 때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 배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 형태를 보면 비정규직(83.1%)이 정규직(16.9%)보다 훨씬 많다. 또한 근무경력은 5-10년 이하(51.7%)가 가장 많고, 5년 이하가 38.1%, 10-15년 이하가 10.2%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특성을 종합해보면 5-10년 이하 경력의 비정규직 정사서로 근무하는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표3-2〉 설문응답자의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빈도(%)
성별	남	4(3.4)	118(100)
	여	114(96.6)	
연령	20대	11(9.3)	118(100)
	30대	34(28.8)	
	40대	60(50.8)	
	50대 이상	13(11.0)	
지위	사서교사	9(7.6)	118(100)
	정사서	56(47.5)	
	준사서	44(37.3)	
	행정직원	4(3.4)	
	기타	5(4.2)	
고용형태	정규직	20(16.9)	118(100)
	비정규직	98(83.1)	
근무경력	5년 이하	45(38.1)	118(100)
	5-10년 이하	61(51.7)	
	10-15년 이하	12(10.2)	

3.2.1.2 저작권재산권에 대한 인지도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저작권재산권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표3-3)에서와 같이 복제권(87.3%), 공연권(79.7%), 전시권(78.8%)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중송신권(53.4%)과 2차적저작물작성권(50.0%)에 관해서는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것은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업무가 복제권이나 공연권, 전시권과 관련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 미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81.4%였다. 그러나 교육 목적이나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그 보다 약간 낮은 73.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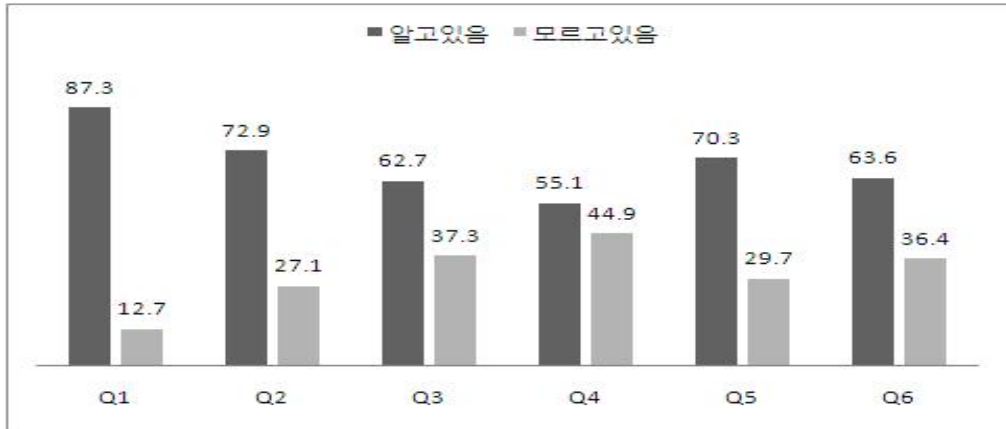
〈표3-3〉 저작재산권 및 이용허락

		빈도(%)		
권리	인지여부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합계
저작재산권	복제권	103(87.3)	15(12.7)	118(100)
	공연권	94(79.7)	24(20.3)	
	공중송신권	63(53.4)	55(46.6)	
	전시권	93(78.8)	25(21.2)	
	2차적저작물작성권	59(50.0)	59(50.0)	
이용허락	저작물 사용 시 저작권자 허락 받아야 함	96(81.4)	22(18.6)	118(100)
	특별한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 사용가능	87(73.7)	31(26.3)	

3.2.1.3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

1) 학교교육 목적 등예의 이용(제25조)

교사나 학생이 학교의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사용할 때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그림3-1)과 같다. 특히 교사가 수업목적으로 자료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87.3%)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또한 수업 목적으로 영상물을 사용할 때 발행시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아는 응답자도 72.9%나 되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에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도 70.3%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교사 또는 학생이 수업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전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 저작물 전체를 수업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장 적었다. 이것은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과 도서관 협력 수업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업무들을 경험한 결과라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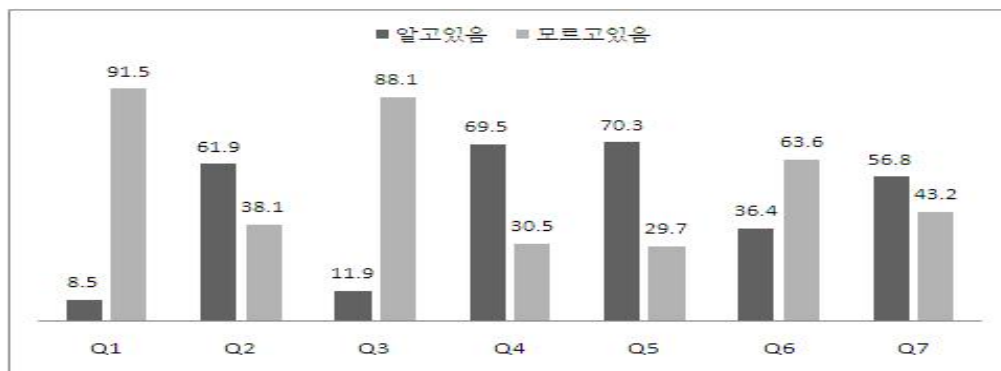
〈그림3-1〉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Q1. 교사는 수업목적상 저작물 일부를 복사 및 제공할 수 있다.
Q2. 교사는 수업목적상 DVD 등 영상자료 상영 시 발행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Q3. 교사는 수업목적상 자료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Q4. 교사는 수업목적상 시, 그림, 사진 등을 부득이한 경우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Q5. 학생은 수업목적상 자료의 일부분을 복사할 수 있다.
Q6. 학생은 수업목적상 자료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저작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연할 때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그림3-2)과 같다. 자원봉사자(70.3%)와 사서의 동화구연(69.5%) 및 교사의 교실에서의 동화구연(61.9%)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영화 상영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불필요(56.8%)하다는 사실도 과반 수 이상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앞서 조사한 공연 및 복제 관련 업무 경험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던 도서관에서의 동화 구연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11.9%로 매우 저조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의 교실에서의 동화구연도 공연에 해당하는지 알고 있는 응답자는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강사의 동화구

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도 36.4%밖에 없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구연동화나 영화 상영은 학교도서관 내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3-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Q1. 교사의 동화구연은 공연에 해당한다.
Q2. 교사의 동화구연 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Q3. 도서관에서의 동화구연은 공연에 해당한다.
Q4. 사서의 동화구연 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Q5. 자원봉사자의 동화구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Q6. 유료 강사의 동화구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Q7. 발행 후 6개월이 지난 영화 상영은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없다.

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저작재산권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과반수이상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한 것은 e-book 등 판매 자료의 홈페이지 등록 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61.0%)이었다. 그러나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한다거나(36.4%), 사서의 도서관 보존용 자료의 전체 복사(37.3%), 타 도서관 사서에게 도서 복사를 제공(38.1%)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낮게 조사되었다. 또한 디지털자료를 출력할 경우 보상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교도서관의 담당자도 44.1%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권 제한규정내용 중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와 관련된 인지 수준은 제25조나 제29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업무가 주로 동화구연이나 영화상영 등과 관련된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제31조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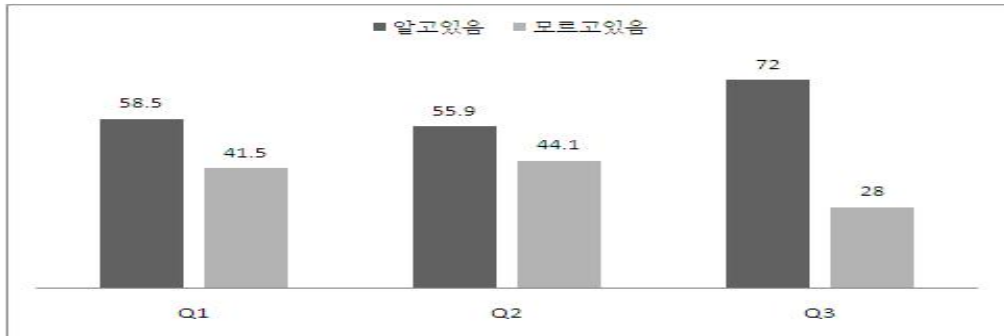
〈그림3-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Q1. 사서는 교사/학생에게 도서관자료 일부분을 1인 1부 복사하여 줄 수 있다.
Q2. 사서는 도서관자료를 보존용으로 전체를 1부 복사할 수 있다.
Q3. 타 도서관 사서에게 우리 도서관도서를 1부 복사해 줄 수 있다.
Q4. 도서관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고 관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Q5. 도서관내 컴퓨터로 디지털자료를 출력할 수 있고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Q6. 도서관자료 중 판매용 e-book은 다시 디지털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릴 수 없다.

4) 기타 제한 규정(제32조, 제28조, 제35조의 3)

저작권권 제한 규정 중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에 대한 조사 결과는 (그림 3-4)과 같다. 응답자의 72.0%가 교육 및 연구 등에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시험자료의 복제 제공(58.5%)과 서평자료 제작 시 표지 및 그림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55.9%로 응답하였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비교적 높은

것은 학교도서관과 관련하여 그 업무가 주로 교육 및 연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된다고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3-4〉 기타 제한규정(제32조, 제28조, 제35조의3)

Q1. 교사에게 시험문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수필 등을 복제해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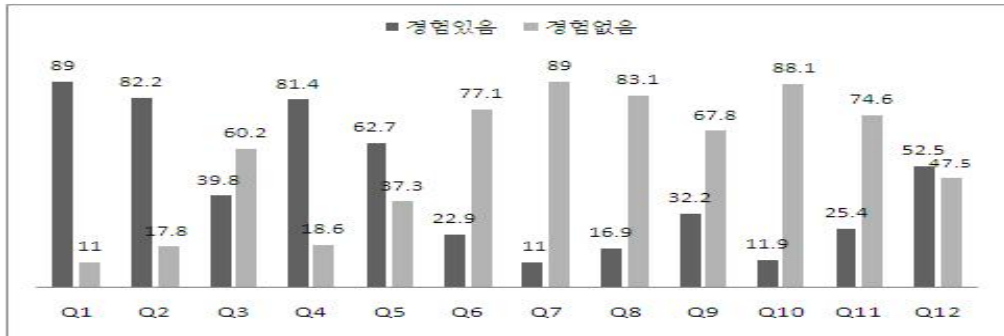
Q2. 서평자료 제작 시 책의 표지 및 책 속의 그림 몇 장면을 사용할 수 있다.

Q3. 교육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3.2.1.4 저작권 관련 업무경험

저작권 규정과 관련된 학교도서관업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3-5)과 같다. 저작권법 제29조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한 경험이 제31조와 관련한 경험보다 즉 사서의 구연동화가 89.0%로 가장 많았고, 자원봉사자의 구연동화(82.2%), 도서관 내 영화상영(81.4%)등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도서관 내에서의 독서교육이나 시청각자료를 이용하는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31조와 관련해서는 도서관내 소장 자료의 일부분 복제의 경험(62.7%)이 많았다. 이에 반해 타 도서관 사서에게 도서관내의 도서를 복사하여 제공(11.0%)하는 경우, 판매용 e-book을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경우(11.9%),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와 홈페이지 등록(16.9%), 소장 자료의 보존용 전체 복제(22.9%)등의 법 제31조의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관한 경험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해서는 서평자료의 제작 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52.5%로 나타났다.



〈그림3-5〉 저작권 관련 업무경험

제29조	Q1. 도서관에서 사서가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다.
	Q2.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가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다.
	Q3. 도서관에서 유료강사가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다.
	Q4. 도서관에서 영화를 틀어준 적이 있다.
제31조	Q5. 교사/학생에게 소장 자료의 일부분을 복사해 준 적이 있다.
	Q6.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보존용으로 1부 전체를 복사한 적이 있다.
	Q7. 타 도서관에 우리 도서관에만 있는 도서를 1부 복사해 준 적이 있다.
	Q8. 도서관내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Q9. 도서관내 컴퓨터로 국회도서관 등의 디지털자료를 출력한 적이 있다.
	Q10. 도서관자료 중 판매용 e-book을 디지털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제32조	Q11. 교사에게 시험문제용 그림, 사진, 수필 등을 복제해준 적이 있다.
제28조	Q12. 도서관 이용자를 위하여 서평자료를 제작한 적이 있다.

3.2.1.5 저작권 교육 관련경험

1)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지도 및 문제해결방법

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지도

앞서 저작재산권의 각 지분권이나 그 권리 제한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측정과는 별도로, 응답자 스스로 저작권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46.6%가 보통이라고 답하

였다. 또한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29.7%)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23.7%) 보다 약간 더 많았다(표3-4 참고).

〈표3-4〉 저작권재산권 인지도

항목	빈도(%)
매우 잘 알고 있다	0(0)
알고 있다	28(23.7)
보통이다	55(46.6)
모른다	35(29.7)
전혀 모른다	0(0)
합계	118(100)

나) 저작권 인지경로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4%로 가장 많았다. 스스로 정보검색을 하여 알게 된 경우가 31.4%이고 저작권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저작권 내용을 접한 경우는 13.6%에 불과했다(표3-5 참고).

〈표3-5〉 저작권 인지경로

항목	빈도(%)
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수업	50(42.4)
스스로 정보검색	37(31.4)
저작권 교육 및 연수	16(13.6)
기타	15(12.7)
합계	118(100)

다) 저작권에 대한 고민경험 및 유형

업무상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118명 중에 78명(66.1%)이 있다고 답하였고, 40명(33.9%)이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고민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들의 저작권과 관련한 고민유형에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영상자료를 활용할 때가 전체의 52.6%로 가장 많았고 저작물을 새로운 매체로 전환할 때(21.8%)와 독후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외부에 전시할 때(21.8%)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비해서 소장하고 있는 영상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인터넷 영상자료 다운로드 횟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도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표3-6 참고). 앞서 저작재산권 각 지분권에 대한 인지도 및 서비스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은 공연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79.7%) 공중송신권은 그 보다 낮았다.(53.4%) 또한 학교교육 목적으로 교사가 수업자료 일부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62.7%로 복제나 공연에 대한 이해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영상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은 공중송신권과 관련된다. 이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6〉 저작권 고민유형

항목	빈도(%)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상자료 활용할 때	41(52.6)
독후활동결과물 홈페이지등록 및 외부전시	17(21.8)
저작물을 새로운 매체로 전환할 때	17(21.8)
기타	3(3.8)
합계	78(100)

라)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권 관련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5.1%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한다고 답하였다. 저작권 사례집이나 연수 자료를 참고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1.2%, 동료에게 문의한다는 11.9%, 저작권 관련 전문단체에

문의한다는 9.3%였다(표3-7 참고).

〈표3-7〉 저작권 문제 해결방법

항목	빈도(%)
인터넷으로 정보검색	65(55.1)
저작권 사례집 및 연수자료 참고	25(21.2)
동료에게 문의	14(11.9)
저작권 관련 전문단체에 문의	11(9.3)
기타	3(2.5)
합계	118(100)

2)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교육 관련경험과 의견

가) 저작권 교육경험

저작권과 관련하여 교육 및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118명 중 96명인 81.4%가 교육 및 연수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2명(18.6%)만이 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교육을 받은 기관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대학(원)이 27.3%로 가장 많았고, 사서교육원(18.2%),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과정(13.6%), 한국저작권위원회(13.6%), 자신의 근무학교(9.1%)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기타 기관에 정독도서관 저작권 특강과 교육청 연수 등이 있다. 응답자 중 81.4%가 저작권 교육 및 연수의 경험이 없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재가 4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업무상 시간부족이 24.6%, 중요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담당자도 7.6%가 있었다(표3-8 참고). 학교 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3-8〉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항목	빈도(%)
적절한 프로그램의 부재	51(43.2)
시간부족	29(24.6)
중요성 결여	9(7.6)
비용문제	0(0)
기타	7(5.9)
합계	96(100)

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86.4%)이 필요하지 않다(13.6%)에 비해 훨씬 높았다.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교육시기에 대해서 방학(33.9%) 또는 시기는 상관없다(32.2%), 학기 중(18.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3-9 참고).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맞는 저작권 교육 및 연수가 개설이 되면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저작권 교육의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응답으로는 사서대상의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은 저작권과 상관이 없어 보여서,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상관없이 저작물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서,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업무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 같다는 응답을 하였다. 학교라는 공익성 때문에 학교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자칫 저작권의 사각지대로 비춰지기 쉽다. 저작권규정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3-9〉 저작권 교육시기

항목	빈도(%)
방학 중	40(33.9)
시기무관	38(32.2)
학기 중	22(18.6)
기타	2(1.7)
합계	102(100)

저작권 교육 방법은 (표3-10)에서와 같이 온라인 교육(43.1%)을 가장 선호하고 오프라인(31.4%), 저작권 전문 강사(25.5%)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의 바쁜 업무로 인하여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기 중에는 온라인 교육을 방학 중에는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다면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높은 참여율을 기대할 수 있겠다.

〈표3-10〉 저작권 교육방법

항목	빈도(%)
온라인 교육	44(43.1)
오프라인 교육	32(31.4)
저작권 전문 강사	26(25.5)
합계	102(100)

응답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교육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저작권 전문 기관(53.9%)이다. 이것은 저작권이라는 교육내용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사서교육기관(22.5%)과 학도넷 등의 학교도서관 관련기관(21.6%)등도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3-11 참고). 학교도서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요 업무와 관련된 저작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 관련단체의 교육 및 연수 내용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3-11〉 저작권 교육희망기관

항목	빈도(%)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저작권전문기관	55(53.9)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사서교육기관	23(22.5)
학도넷 등의 학교도서관 관련기관	22(21.6)
기타	2(2.0)
합계	102(100)

3) 이용자 대상 저작권 교육경험

가) 교사

교사를 상대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거의 모든 응답자 94.9%(112명)는 경험이 없었으며, 있는 경우는 5.1%(6명)로 극히 적었다. 안내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스스로의 저작권 지식부족이 49.1% (55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서업무가 아니라는 생각 19.6%(22명), 저작권 안내책자의 부족 17.9%(20명), 그리고 교사의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5.4%(6명)순으로 조사되었다. 극히 일부이지만 교사를 상대로 저작권 안내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그 안내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교사가 질문하면 안내한다, 교사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먼저 안내한다, 또는 저작권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저작권에 대한 안내 시 문제점에는 학교도서관업무와 관련된 저작권 안내책자의 부족과 스스로 저작권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나) 학생

학생을 상대로 저작권 교육을 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없다가 90.7%(107명), 있다가 9.3%(11명)로 조사되었다. 교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교육과 비슷한 수준으로 학생을 상대로 한 저작권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 교육의 미실시 이유는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다가 39.3%(42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저작권 안내책자의 부족 25.2%(27명)와 시간부족 16.8%(18명),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10.3%(11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저작권의 내용 자체가 전문적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담당자의 이용자 대상의 저작권 교육도 실시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 교육을 해보았다는 응답자들의 교육방법을 보면 학교도서관 이용자 교육시간을 통해서, 도서관에서 평상시에, 교사의 요청에

의한 수업을 통해서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저작권 교육 시 문제점으로는 교육에 활용할 저작권 수업교안의 부족과 사서 스스로의 저작권 지식 부족, 시간 부족, 안내책자 부족 등으로 답하였다.

3.2.2 교사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및 교육현황

3.2.2.1 설문응답자의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84.3%로 남성 15.7% 보다 훨씬 많았으며, 연령은 40대가 39.7%로 가장 많았고, 교직경력은 15년 이상이 36.4%로 가장 많았다(표3-12 참고).

〈표3-12〉 설문응답자의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빈도(%)
성별	남	19(15.7)	121(100)
	여	102(84.3)	
연령	20대	22(18.2)	121(100)
	30대	28(23.1)	
	40대	48(39.7)	
	50대	19(15.7)	
	50대 이상	4(3.3)	
근무경력	5년 이하	23(19.0)	121(100)
	5-10년 이하	21(17.4)	
	10-15년 이하	33(27.3)	
	15년 이상	44(36.4)	

3.2.2.2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교사의 경우에는 공연권(81.0%), 전시권(72.7%)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았으나, 공중송신권(55.4%), 복제권(54.5%), 2차적저작물작성권(52.9%)은 상대

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이것은 교사가 공연권 및 전시권 관련 업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84.3%였고, 교육목적이나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도 79.3%로 매우 높았다. 학교도서관담당자와 비교해 볼 때 공연권,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인지도는 교사가 약간 높았고, 복제권에 대한 인지도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보다 33% 정도 낮았다(표3-13 참고).

〈표3-13〉 저작재산권 및 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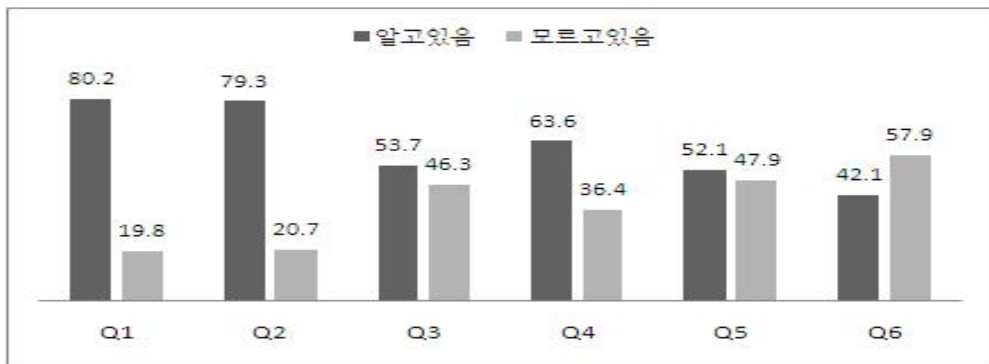
		빈도(%)		
권리	인지여부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합계
저작재산권	공연권	98(81.0)	23(19.0)	121(100)
	전시권	88(72.7)	33(27.3)	
	공중송신권	67(55.4)	54(44.6)	
	복제권	66(54.5)	55(45.5)	
	2차적저작물작성권	64(52.9)	57(47.1)	
이용허락	저작물 사용 시 저작권자 허락 받아야 함	102(84.3)	19(15.7)	121(100)
	특별한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 사용가능	96(79.3)	25(20.7)	

3.2.2.3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

1) 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제25조)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서의 이용)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복사하여 배포하는 행위(80.2%), 교실 내 영화 상영(79.3%), 학생의 수업자료 복사(76.6%)와 같은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

답자가 약75~80% 정도로 매우 많았다. 학생이 수업에 필요할 경우 수업자료의 일부분을 복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이보다 낮은 63.6%였다. 그러나 사서와 마찬가지로 교사나 학생이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아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과반수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수업목적을 위하여 DVD 등의 영상자료를 이용할 경우 그 발행시점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과반수에 못 미치는 42.1%에 불과하였다. 주로 교실 내에서 이루지는 행위로 교사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복제 및 배포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3-6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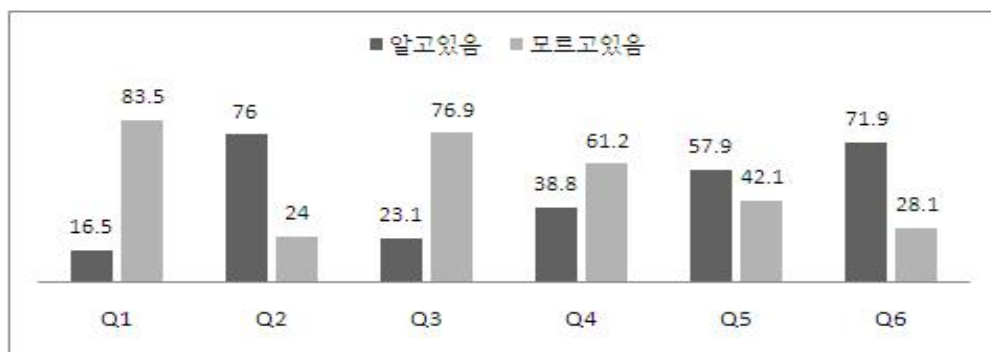


〈그림3-6〉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 | |
|--|
| Q1. 교사는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
| Q2. 교사는 수업목적상 교실에서 영화를 틀어줄 수 있다. |
| Q3. 교사는 수업목적상 자료의 일부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
| Q4. 학생은 수업목적상 수업자료 일부분을 복사할 수 있다. |
| Q5. 학생은 수업목적상 수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
| Q6. 교사는 수업목적상 DVD등과 같은 영상자료를 발행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틀어줄 수 있다. |

2) 비영리 목적의 공연(제29조)과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및 기타 제한 규정

저작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연할 때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그림3-7)과 같다. 교사의 동화구연(76.0%)이나 교육 및 연구 등을 위한 저작물 사용(71.9%)에 있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교실 내 동화구연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16.5%에 그쳤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서에게 수업자료의 일부를 복제해달라고 부탁하는 행위(23.1%)와 도서관 내 컴퓨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료를 출력하는 행위(38.8%)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주로 법 제31조와 관련된 경우로 교사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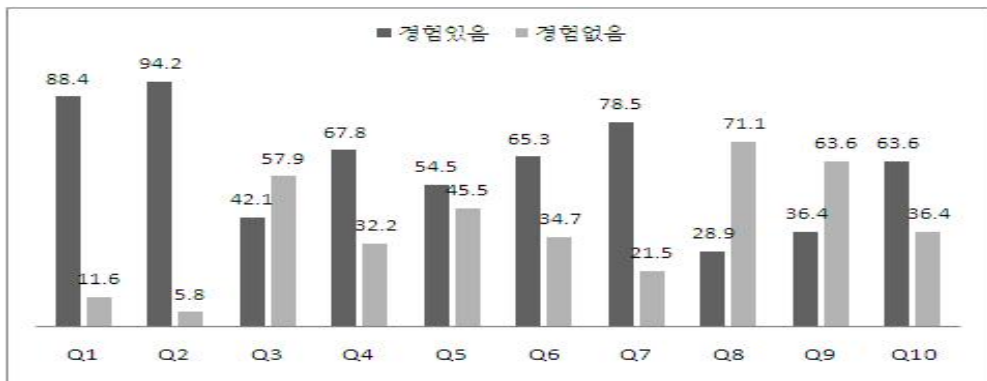


〈그림3-7〉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기타 제한 규정

제29조	Q1. 교실 내 동화구연은 공연에 해당한다.
	Q2. 교사의 동화구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제31조	Q3. 사서에게 수업자료 일부분의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Q4. 도서관내에서 디지털 자료를 출력할 수 있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제32조	Q5. 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사진, 수필 등을 복제할 수 있다.
제31조의2	Q6. 교육 및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2.2.4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

교사의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을 조사한 결과 공연 및 복제, 전송에 관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실 내 영화 상영에 대한 경험이 94.2%로 가장 많았고, 저작물 일부를 복사하여 배포한 경험도 88.4%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실 내 동화구연(78.5%), 학생이 수업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본 경우(67.8%), 발행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상자료의 상영(65.3%) 등 주로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와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와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다(그림3-8 참고).



〈그림3-8〉 저작권 관련 업무경험

제25조	Q1. 저작물 일부를 복사하여 나누어 준 적이 있다.
	Q2. 교실에서 영화를 틀어준 적이 있다.
	Q3. 수업자료 일부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Q4. 학생이 수업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Q5. 학생이 수업자료일부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Q6. DVD등의 영상자료를 발행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여준 적이 있다.
제29조	Q7. 교실에서 동화책을 학생들에게 읽어준 적이 있다.
제31조	Q8. 사서에게 수업자료로 도서관 소장 자료 일부분을 복사 부탁한 적이 있다.
	Q9. 도서관 내 컴퓨터로 디지털자료를 출력한 적이 있다.
제32조	Q10. 시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사진, 수필 등을 복제한 적이 있다.

3.2.2.5 저작권 교육 관련 경험

1)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지도 및 문제해결방법

가)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지도

저작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통이다가 50.4%로 가장 많았고 알고 있다가 24.8%, 모른다가 23.1%, 매우 잘 알고 있다가 1.7%로 사서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표3-14 참고).

〈표3-14〉 저작권 인지도

항목	빈도(%)
매우 잘 알고 있다	2(1.7)
알고 있다	30(24.8)
보통이다	61(50.4)
모른다	28(23.1)
전혀 모른다	0(0)
합계	121(100)

나) 저작권 인지경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교사집단의 43.8%가 저작권 교육 및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31.4%, 대학(원)에서 저작권 수업을 통해서 6.6%였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대학(원)에서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42.4%)가 가장 많았고, 저작권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알게 된 경우(13.6%)는 가장 적었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로 학교 도서관 담당자에 비해 교사들의 저작권 교육기회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표3-15 참고).

〈표3-15〉 저작권 인지경로

항목	빈도(%)
저작권 교육 및 연수를 통해서	53(43.8)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38(31.4)
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수업을 통해서	8(6.6)
기타	22(18.2)
합계	121(100)

다) 저작권에 대한 고민경험 및 유형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62.0%였다. 교사들의 고민은 교육자료 제작 시가 3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DVD등의 영상자료를 사용할 때(28.0%)와 시험문제를 제작할 때(16.0%), 학교 행사 안내나 가정통신문 제작 시(16.0%)순으로 나타났다(표3-16 참고).

〈표3-16〉 저작권 고민유형

항목	빈도(%)
수업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시	29(38.7)
DVD 등의 영상자료 사용 시	21(28.0)
시험문제 제작 시	12(16.0)
학교 행사 안내, 가정통신문 등의 제작 시	12(16.0)
기타	1(1.3)
합계	75(100)

라)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해결방법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52.1%가 인터넷으로 검색한다고 응답하였다. 저작권 사례집이나 연수 자료를 참고한다는 19.0%, 동료에게 문의한다는 15.7%, 기타의견이 9.1%, 저작권 전문단체에 문의한다는 3.3%, 학교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한다는 응답은 단

한 명인 0.8%로 조사되었다(표3-17 참고).

〈표3-17〉 저작권 문제 해결방법

항목	빈도(%)
인터넷으로 정보검색	63(52.1)
저작권 사례집이나 연수자료 참고	23(19.0)
동료에게 문의	19(15.7)
저작권관련 전문단체에 문의	4(3.3)
학교도서관사서에게 문의	1(0.8)
기타	11(9.1)
합계	121(100)

2) 교사의 저작권 교육 관련 경험과 의견

가) 저작권 교육경험

저작권과 관련하여 교육 및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1.2%가 없다고 답하였고,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8.8%였다. 학교도서관 담당자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저작권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가 약 30% 더 많았다. 교육을 받은 기관을 살펴보면 근무학교 교내연수가 32.0%로 가장 많았고, 시, 도교육청 등의 연수원에서의 교육은 29.0%,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 응답자는 24.0%, 교육은 받았지만 교육기관을 잘 모르는 경우가 11.9%, 대학원이 3.4%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1.2%가 저작권 교육 및 연수의 경험이 없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관심이 없어서가 45.2%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시간부족이 24.2%,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7.6%, 기타의견에 4.8%, 중요성이 없다고 답한 교사도 3.2%가 있었다(표3-18 참고).

〈표3-18〉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항목	빈도(%)
관심부족	28(45.2)
시간부족	15(24.2)
적절한 프로그램부족	14(22.6)
중요성부족	2(3.2)
기타	3(4.8)
합계	62(100)

나)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및 방법

응답자의 89.3%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0.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저작권 교육 및 연수시기에 관해서는 시기는 무관하다고 응답한 교사는 40.5%로 가장 많았고, 학기 중이 34.7%, 방학 중이 24.0%, 기타가 0.8%로 조사되었다. 원하는 교육 방법은 온라인 교육이 45.4%로 가장 많았고, 저작권 전문 강사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도 43.5%로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오프라인 교육은 7.4%, 학교도서관 사서에게 교육 받고 싶다고 응답한 교사가 3.7%있다(표3-19 참고).

〈표3-19〉 저작권 교육방법

항목	빈도(%)
온라인교육	49(45.4)
저작권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	47(43.5)
오프라인교육	8(7.4)
학교도서관 사서를 통한 교육	4(3.7)
합계	108(100)

3.2.3 비교 분석

3.2.3.1 집단 간 비교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작권 인지도 및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과 저작권 교육현황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다.

첫째,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지도에서 두 그룹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은 공연권과 전시권으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공연권 79.7%, 전시권 78.8%가 알고 있었고, 교사의 경우 공연권 81.0%, 전시권 72.7%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 그룹 모두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공중송신권 53.4%, 2차적저작물작성권 50%, 교사의 경우는 공중송신권은 55.4%,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52.9%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제권의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교사보다 약 33%정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자료복사 등의 업무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나 저작권법 제31조가 주로 저작물의 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두 그룹 간 비교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25조 중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자료 일부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87.3%, 교사의 경우 80.2%로 매우 많았다. 그리고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영상자료를 상영할 경우 발행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72.9%, 교사의 경우 76.0%로 두 집단 모두 비교적 높았다. 또한 학생도 수업 목적으로 자료의 일부분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70.3%, 교사 76.6%로 두 그룹 모두 교사에 의한 수업 목적 복제에 대한 인지도 보다는 낮지만 비교적 많은 응답자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교사와 학생이 수업 목적으로 자료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다.

제29조 중 교사의 동화구연이 공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8.5%, 교사 16.5%로 두 집단 모두 매우 낮았다. 그러나 교사의 동화구연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는 61.9%, 교사는 76.0%로 교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1조 중 도서관내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자료를 출력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44.1%, 교사 38.8%로 두 집단 모두 잘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수업자료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40.7%, 교사의 경우 23.1%로 두 집단 모두 적었지만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조금 더 많았다.

제32조 중 시험자료로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 58.5%, 교사 57.9%로 두 집단 모두 비교적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또한 제35조의3에 대하여 교육 및 연구 등에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72.0%, 교사의 경우 71.9%로 비교적 많았다.

셋째,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에 대한 두 집단의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법 제29조 중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 모두 경험이 많은 경우는 학교도서관과 교실에서의 동화구연이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89.0%, 교사의 경우 78.5%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좀 더 많았다.

제31조 중에서 도서관내 컴퓨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자료를 출력한 경험에 대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32.2%, 교사의 경우 36.4%로 두 집단 모두 매우 적었다. 그리고 도서관 자료의 일부복제 경험은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62.7%, 교사는 28.9%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약 30%정도 더 많았다.

제32조 중 시험자료로서의 저작물 복제 경험은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25.4%, 교사의 경우는 63.6%로 교사가 약 40%정도 많았다.

넷째,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의 저작권 인지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보통이 46.6%, 모르고 있다 29.7%, 알고 있다 23.7%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는 보통이 50.4%, 알고 있다 24.8%, 모르고 있다 23.1%로 교사 집단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저작권 교육 경험에 있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보다 교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의 인지경로에 대하여 스스로 정보검색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 모두 31.4%로 같았다. 그러나 저작권 교육 및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13.6%, 교사는 43.8%로 교사의 저작권 교육 및 연수의 기회가 약 30% 정도 더 많았다. 또한 대학(원)의 저작권 수업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42.4%, 교사의 경우 6.6%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약 35% 정도 더 많았다.

저작권에 대한 고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66.1%, 교사의 경우 62.0%로 두 집단 모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 유형 중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상자료나 DVD 등의 영상자료를 활용할 때 고민을 한다고 답한 경우가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52.6%, 교사의 경우 28.0%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약 20% 정도 많았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저작물을 새로운 매체로 전환할 때(21.8%), 독후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외부에 전시할 때(21.8%)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사의 경우에는 수업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시(38.7%), 시험문제를 제작할 때(16.0%), 학교 행사 안내나 가정통신문 등의 제작 시(16.0%)에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정보검색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55.1%, 교사는 52.1%로 두 집단이 유사하였다. 이에 비해 사례집이나 연수 자료를 참고한다고 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21.2%, 교사의 경우 19.0%로 비교적 적었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단체에 문의한다는 응답은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9.3%, 교사의 경우는 3.3%로 두 집단 모두 매우 적었다. 한편 교사의 경우 학교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한다는 응답이 0.8%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 간 저작권 교육관련 경험과 의견에 대한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작권 교육 경험에 대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는 18.6%, 교사는 48.8%가 있다고 응답했다. 교사가 학교도서관 담당자보다 약 30% 정도 교육 경험이 많았다. 교육 경험이 있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교육 받은 기관은 대학(원)이 27.3%로 가장 많았고, 사서교육원(18.2%),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13.6%)과정, 한국저작권위원회(13.6%), 자신의 근무학교(9.1%)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사의 경우는 근무학교 교내연수가 32.0%로 가장 많았고, 시, 도 교육청 등의 연수원 29.0%,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한 응답자는 24.0%, 대학원이 3.4%순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 교육 및 연수를 받지 않은 응답자 중 그 이유가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라고 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43.2%, 교사의 경우 22.6%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약 20%정도 많았다. 그리고 시간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24.6%, 교사의 경우 24.6%로 두 집단이 같게 조사되었다. 또한 교사의 응답 중 관심부족이 45.2%로 조사되었다.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86.4%, 교사의 경우 89.3%로 두 집단 모두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많다고 응답하였다.

희망하는 교육시기에 대해서 시기는 상관없다고 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32.2%, 교사의 경우 40.5%로 두 집단 모두 시기는 상관 없다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방학 중이라고 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33.9%, 교사는 24.0%, 학기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18.6%, 교사의 경우는 34.7%로 교사의 경우는 학기 중 교육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교육 방법 중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응답은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43.1%, 교사의 경우 45.4%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에 응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31.4%, 교사의 경우 7.4%로 나타났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리고 저작권 전문 강사를 통한 교육에 응답한 경우는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25.5%, 교사의 경우 43.5%로 교사는 저작권 전문 강사에 의한 저작권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교도서관 사서를 통해 저작권 교

육을 희망한 교사는 3.7%로 매우 낮았다.

3.2.3.2 저작권 인지도와 업무경험 및 교육 간의 관계성 분석

1) 분석내용 및 방법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의 저작권 인지도와 업무경험 및 교육간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집단 간 평균비교분석 방법인 ANOVA (일원배치 분산분석)를 활용하였다.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이 저작권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둘째, 저작권 교육 수강 경험이 저작권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신뢰성이란 측정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을 뜻하며 측정변수의 진정한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들의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 측정결과 모든 항목에서 크론바흐 알파계수 값이 0.7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었다.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이다. 그러나 두 집단 간 업무가 상이하기 때문에 설문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각 집단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문항을 추출하여 저작권 인지도와 업무경험 및 저작권 교육 간의 관계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문항은 (표4-1)과 같다. 여기서 사용된 설문내용이 각 집단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문항으로 추출하였지만 앞서 분석한 기술통계의 내용과 같이 전체적인 차이를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표4-1〉 통계분석용 설문 문항

대상	구분	문항
학교 도서관 담당자	저작권재산권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재산권 제한	도서관에서 사서가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된다.
		도서관내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국회도서관 등에서 디지털로 올려놓은 자료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사에게 중간 및 기말시험(단원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 수필 등을 복제해 줄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를 위하여 서평자료를 만들 때 책의 표지 및 책속의 그림 및 장면을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 관련업무경험	도서관에서 사서가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다.
		도서관내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국회도서관 등에서 디지털로 올려놓은 자료를 출력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교사에게 중간 및 기말시험(단원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 수필 등을 복제해 준 적이 있다.
		도서관 이용자를 위하여 서평자료를 제작한 적이 있다.
교사	저작권재산권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재산권 제한	교실에서 그림책을 학생들에게 읽어 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된다.
		도서관내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국회도서관 등에서 디지털로 올려 놓은 자료를 출력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중간 및 기말시험(단원평가)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사진, 수필 등을 복제할 수 있다.
		수업에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저작권 관련업무경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다.
		도서관내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국회도서관 등에서 디지털로 올려 놓은 자료를 출력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교사가 중간 및 기말시험(단원평가)에 사용하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 수필 등을 복제하는 행위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2)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이 저작권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의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이 저작재산권 규정 및 그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저작재산권 인지도에 관한 유의확률은 0.351로 기준치인 0.05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이 저작재산권 인지도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는 0.004로 기준치인 0.05보다 낮았다. 즉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을수록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곧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많을수록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표4-2 참고).

〈표4-2〉 업무경험과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규정 간의 관계

구분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P)
저작재산권	집단 간	.965	1	.965	.872	.351
	집단 내	262,257	237	1,107		
	합계	263,222	238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집단 간	8,844	1	8,844	8.240	.004(*)
	집단 내	254,378	237	1,073		
	합계	263,222	238			

(*)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을 나타냄

3) 저작권 교육 경험이 저작권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 교육경험이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 규정에 관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결과 저작권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일수록 저작재산권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권 교육에 따라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대한 인지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작권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일수록 저작재산권 및 그 제한 규정에 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저작권 교육을 받는다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

시,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관련(제25조 내지 제32조)된 구연동화나 교사의 저작물 일부분 복제, 도서관내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자료의 출력, 시험문제로서의 저작물 복제, 사서의 서평자료 제작 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표4-3 참고).

〈표4-3〉 저작권 교육경험에 따른 저작권 인지도 차이

구분		제곱합(SS)	df	평균제곱(MS)	F	유의확률(P)
저작재산권	집단 간	.649	1	.649	4.617	.033(*)
	집단 내	33.317	237	.141		
	합계	33.967	238			
저작재산권 제한	집단 간	8.691	1	8.691	7.905	.005(*)
	집단 내	260.572	237	1.099		
	합계	269.264	238			

(*)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을 나타냄

IV. 문제점 분석 및 제언

4.1 연구결과 요약

4.1.1 학교도서관 담당자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저작권 인지도 및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과 저작권 교육현황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재산권 중 복제권(87.3%), 공연권(79.7%), 전시권(78.8%)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공중송신권(53.4%)과 2차적저작물작성권(50.0%)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둘째, 저작권재산권 제한 규정 중 저작권법 제25조와 관련하여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자료 일부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87.3%로 매우 많았다. 그리고 교사가 수업 목적으로 영상자료를 상영할 경우 발행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학생도 수업 목적으로 자료의 일부분을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약 70% 이상으로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이 수업목적으로 자료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제29조와 관련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도서관 내에서 구연동화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많았다. 그러나 구연동화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11.9%로 매우 낮았다. 제31조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자료 취급관련사항에 대한 내용 및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셋째, 저작권재산권 관련 업무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 저작권법 제29조와 관련한 사서, 자원봉사자의 구연동화와 도서관내 영화상영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타 도서관 사서에게의 자료 복사 제공,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등은 경험이 적었다.

넷째,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수업을 통해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저작권에 대해 고민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약 66%로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영상자료 사용 시, 저작물을 새로운 매체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 독후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외부에 전시할 때 주로 고민한다고 조사되었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인터넷정보검색, 저작권사례집이나 연수자료 참고를 통해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약 81%가 저작권 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 시간부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약 86%가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방학 또는 시기와 상관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선호한다고 조사되었다.

4.1.2 교사

교사대상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저작권 교육과 관련된 설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지도 중 공연권, 전시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복제권,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둘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중 제25조와 관련해서 저작물 일부 복사배포, 교실 내 영화상영규정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제29조와 관련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교실 내에서 구연동화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나 구연동화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1조와 관련해서는 도서관 내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자료출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저작재산권 관련 업무 경험 결과 저작권법 제25조와 제29조와 관련하여 공연 및 복제, 전송에 관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실 내 영화 상영에 대한 경험이 94.2%로 가장 많았고 저작물 일부를 복사하여 배포한 경험도 88.4%로 나타났다. 교실 내 동화구연(78.5%), 학생이 수업자료를 복사하는 것을 본 경우(67.8%), 발행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상자료의 상영(65.3%) 등이 있었다.

넷째,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교사는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저작권에 대해 고민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약 62%로 수업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시, DVD 등의 영상자료 사용 시, 시험문제 제작 시, 학교 행사 안내나 가정통신문 등의 제작 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조사 되었다. 또한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인터넷정보검색, 저작권사례집이나 연수자료 참고, 학교도서관 사서에게 문의를 통해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약 48%가 저작권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부족과 시간부족,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사의 89.3%가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시기와 상관없이 또는 학기 중에 온라인교육을 선호한다고 조사되었다.

4.1.3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 간 비교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집단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 제한 규정,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지도 중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교사는 공연권, 전시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복제권,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둘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중 제29조와 관련해서 두 집단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구연동화를 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나 구연동화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아는 응답자는 매우 낮았다. 제31조와 관련해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디지털자료 취급관련사항에 대

한 내용 및 보상금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교사는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 내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자료출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에 대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제29조와 관련해서 사서, 자원봉사자의 구연동화와 도서관내 영화상영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타 도서관 사서에게의 자료 복사 제공,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등에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교사는 제25조와 제29조와 관련한 영화상영, 저작물 일부복사배포, 구연동화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

넷째,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수업을 통해, 교사는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을 하였다.

저작권에 대해 고민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약 66%로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영상자료 사용 시, 저작물을 새로운 매체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 독후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외부에 전시할 때 주로 고민한다고 조사되었다. 교사의 저작권에 대한 고민경험 약 62%로 수업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시, DVD 등의 영상자료 사용 시, 시험문제 제작 시, 학교 행사 안내나 가정통신문 등의 제작 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조사 되었다.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인터넷정보검색, 저작권사례집이나 연수자료 참고를 통해 해결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도 인터넷정보검색, 저작권사례집이나 연수 자료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도서관 사서에게 문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약 81%는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 시간부족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교사는 약 48%가 저작권 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부족과 시간부족,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로 조사되었다.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약 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방학 또는 시기와 상관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선호한다고 조사되었다. 교사의 89.3%가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시기와 상관없이 또는 학기 중에 온라인교육을 선호한다고 조사되었다.

4.2 문제점 분석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저작권 중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은 잘 알고 있었으나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의 교육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므로 공중송신권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도서관에서 매체제작시 원저작물을 변형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설문 분석 결과 저작권 관련 업무경험은 많지만 저작권의 인지가 낮은 경우는 사서의 구연동화와 자원봉사자의 구연동화, 도서관내에서의 영화상영이었다. 또한 도서관내 소장 자료 일부분 복사의 경우에도 업무 경험은 비교적 많았지만 관련규정은 잘 모르고 있었다.

셋째,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설문 결과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도 적고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경우가 있었다. 즉 도서관내 소장 자료를 보존용으로 1부 전체 복사하는 경우, 타 도서관 사서에게 도서복사를 제공하는 경우,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도서관내 컴퓨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료를 출력하는 경우와 그 보상금 지급의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로 저작권법 제31조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학교도서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관련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설문 결과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은 적고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있었다. 즉 판매용 e-book을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로 주로 전송과 관련된 업무와 저작권법 제32조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다섯째,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서비스 대상인 교사의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은 저작권법 제25조와 제29조와 관련이 많았다. 특히 수업자료의 일부분 복사배포와 교실 내 영화상영, 교실에서의 구연동화, 시험문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교실 내 영화상영이나 구연동화의 경우는 업무 경험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공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부족하였다.

여섯째, 저작권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약 66%정도가 저작권에 대해 고민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약 86%가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약 81%가 저작권 교육 경험이 없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적절한 프로그램 부족과 시간 부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저작권 관련 업무시 고민도 많고 저작권 교육에 대한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지만 저작권 교육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비해 교사의 경우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이 비교적 많이 제공되고 있지만 관심부족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이해하고 교사 그룹에게 서비스해야 할 주체인 사서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보다 이용자를 위한 교육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 방안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통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 교육경험은 저작권 인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권 교육을 받는다면 저작권 인지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다.

4.3.1 교육내용

첫째, 학교도서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저작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설문 분석결과 사서업무 중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무는 도서관에서의 사서의 구연동화, 자원봉사자의 구연동화, 문화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영화상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서관 업무는 저작권재산권 중 공연권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재산권 제한규정 중 저작권법 제29조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동화구연 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고 한 응답자가 많았으나 동화구연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공연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제29조 공연권의 제한규정을 활용하여 동화구연을 한 것이 아니라 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학교도서관 담당자나 교사가 동화구연을 하는 것은 제29조에 적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무일지라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 좀 더 합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도서관 담당자 업무와 관련된 규정 중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인지도가 낮았던 부분은 저작권재산권 중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었다.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현재 학교교육이 인터넷활용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학교도서관에서 매체제작 시 원저작물을 변형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교육도 필요하다. 저작권재산권 제한규정에서 제25조와 관련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수업목적으로 자료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수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제29조와 관련해서는 앞의 연구 결과와 같이 구연동화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경우가 매우 낮았고 좀 더 합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제31조와 관련해서는 도서관에서의 소장자료의 일부분 복사제공, 소장 자료의 보존용으로서의 전체복사, 타 도서관 사서에게 도서 복사제공,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디지털 자료출력과 보상금 지급문제 등이다. 이러한 경우는 저작권재산권 중 복제권과 전송권과 관련이 있고 저작권재산권 제한 규정 중 제31조와 관련이 있다. 제31조는 모든 도서관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라고 해서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는 업무 외에도 도서관 간의 상호협력과 디지털도서관을 통한 정보의 공유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이 현재의 학교도서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내용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설문분석결과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은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영상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물을 새로운 매체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 독후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외부에 전시할 경우 저작권 문제로 고민한다고 나타났다.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영상자료를 사용할 경우와 독후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경우는 저작권 중 공중송신권의 전송권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저작물을 새로운 매체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복제권 및 저작권법 제31조와 관련이 있다. 또한 독후활동 결과물을 외부에 전시하는 경우는 전시권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저작권 관련 고민유형 결과에 나온 내용들은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실제 업무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교사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의 저작권 인지도에서 낮게 나타난 경우는 교사와 학생의 수업자료 일부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경우, 교실에서 발행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DVD 등의 영상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사서에게 도서관 소장 자료일부분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디지털자료출력과 보상금 지급 문제의 경우는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교사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하고 있는 업무는 수업자료의 일부복사, 교실내의 영화상영, 교실에서의 구연동화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교사도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업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시, DVD 등의 영상자료 사용 시, 시험문제 제작 시, 학교 행사 안내나 가정통신문 등의 제작할 때의 경우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저작권 관련 업무는 사서가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 업무를 지원해야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저작권 규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한 것이다.

4.3.2 교육방법

첫째,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저작권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자료의 관리와 자료의 복사 및 대출, 영상자료 상영, 매체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협력수업 등 다른 관종의 도서관 담당자와는 달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직접 또는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즉 일반 사서들의 업무는 저작권법 제31조와 관련된 소장 자료의 복사라든지 디지털 자료출력 등과 관련이 많다면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업무는 교사와 학생을 위한 수업목적상 필요한 자료의 복사배포, 도서관에서의 구연동화, 영화상영 등 제31조 보다는 제25조와 제29조 등과 관련이 많다. 앞서 설문 분석결과에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는 것은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재 사서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교육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일반 사서 대상의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은 그 교육내용과 더불어 교육기관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앞서 조사한 설문 결과에 의하면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53.9%가 희망하는 저작권 교육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국립중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관련단체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작권이라는 교육내용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작권관련 전문기관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희망하는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프로그램이나 학도넷 등의 학교도서관 관련단체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도서관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저작권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관련단체에서의 교육내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학교도서관 관련단체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에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실제 저작권 업무와 관련된 의견을 조사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저작권 전문 기관에 맞춤형식으로 교육을 의뢰하여 학교도서관 업무와 관련이 높은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다면 효율적인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저작권 전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 전문교육은 방학 중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교육시기 및 유형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학기 중 보다 방학동안의 교육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오프라인 교육, 저작권 전문 강사의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희망하는 저작권 교육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현재 저작권아카데미를 통해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교육은 아니었으며 온라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일반사서 대상의 저작권 교육은 사이버교육(온라인)1회, 집합교육(오프라인)1회로 총 연2회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학교도서관 담당자만을 위한 교육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에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저작권 교육과정이 생긴다면 업무 상황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셋째, 대학(원)에서의 문헌정보학 전공자 대상의 교육과정에 저작권 관련 교육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40%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을 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수업을 통해서 습득하였다고 나타났다. 『2011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중 문헌정보학일반의 교과목 현황 분석결과 과거에 비해 저작권관련 교과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노영희, 안인자, 최상기, 2012). 이러한 변화는 곧 과거에 비해 저작권의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앞으로 저작권 관련 교과목이 점차 강화될 필요가 있다.

4.3.3 저작권 안내 정보원 개발

첫째,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도서관 이용자에게 저작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저작권 매뉴얼을 개발해야 된다. 설문 분석결과에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도서관 업무 중 발생한 저작권 관련 문제해결방법으로 인터넷 정보 검색 외에 저작권 사례집 및 연수 자료를 참고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저작권 인지도 조사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였던 내용,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내용, 교사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 저작권법 제 31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저작권 매뉴얼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교사에 비해 저작권 교육이나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그리고 교사의 저작권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사례집은 이미 개발이 되었다. 『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저작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7), 『쉽게 익히는 이야기 속 학교 저작권』(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0), 『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 지침서』(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등의 책자를 통해 저작권의 기본개념과 저작권 침해사례, 학교 수업과 관련된 저작권 등을 통해 저작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사보다 우선해야 될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이나 사례집은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미 교사를 위한 사례집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 관련 매뉴얼이나 사례집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자유롭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저작권 자료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은 도서관 업무 중 발생한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저작권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원은 설문결과에서도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선호하는 기관으로 저작권 업무와 관련된 상담이라든지 사례 및 저작권 전문교육의 강의내용 등을 공유한다면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여 진다.

V. 결론

학교도서관의 담당자는 학생 및 교사 등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내 정보자료의 관리와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협력수업 등 학교의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와 교육과정에는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이 사용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이용자인 교사나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저작권 규정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합법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저작권 인지도와 저작권 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이 저작재산권과 그 제한 규정 및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 및 저작권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교육복지특별지원 학교로 선정된 156개의 서울시 초등학교도서관 담당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저작권법에 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은 잘 알고 있었고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잘 모르고 있었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중 저작권법 제25조와 관련해서는 교사가 수업목적으로 자료 일부를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으나 교사와 학생이 수업목적으로 자료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제29조와 관련해서는 도서관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구연동화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많았지만 구연동화가 저작권법상의 공연에 해당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다. 제31조와 관련해서는 디지털자료의 취급과 보상금지급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재산권 관련 업무 경험은 저작권법 제29조와 관련한 사서, 자원봉사자의 구연동화와 도서관내 영화상영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타 도서관 사서에게의 자료 복사 제공,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 등은 경험이 적었다.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수업을 통해 저작권 내용을 알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저작권에 대한 고민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약 66%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약 81%가 저작권 교육경험이 없다고 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는 적절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약 86%가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방학 또는 시기와 상관없이 온라인 교육을 선호한다고 조사되었다.

교사는 저작권 중 공연권, 전시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복제권,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저작권 제한 규정 중 제25조와 관련해서 저작물 일부 복사배포, 교실 내 영화상영규정은 잘 알고 있었고 제29조와 관련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교실 내에서 구연동화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았으나 구연동화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다. 제31조와 관련해서는 도서관 내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자료출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 결과 저작권법 제25조와 제29조와 관련하여 공연 및 복제, 전송에 관한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교사는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저작권에 대해 고민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약 62%였고 교사의 약 48%가 저작권 교육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부족과 시간부족,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사의 89.3%가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시기와 상관없이 또는 학기 중에 온라인교육을 선호한다고 조사되었다.

두 집단을 비교해보면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저작권권에 대한 인지도 중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교사는 공연권, 전시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복제권, 공중송신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저작권 제한 규정 중 제29조와 관련해서 두 집단 모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구연동화를 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나 구연동화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다. 제31조와 관련해서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디지털자료 취급관련사항에 대한 내

용 및 보상급 지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교사는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 내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자료출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작권 관련 업무 경험에 대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제29조와 관련해서 사서, 자원봉사자의 구연동화와 도서관내 영화상영에 대한 경험이 많았고, 교사는 제25조와 제29조와 관련한 영화상영, 저작물 일부복사 배포, 구연동화에 대한 경험이 많았다.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대학(원)에서의 저작권 수업을 통해, 교사는 교육 및 연수를 통해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을 하였다. 저작권에 대해 고민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약 66%, 교사는 약 62%로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약 81%는 저작권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그 이유는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 시간부족, 교사는 약 48%가 저작권 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부족과 시간부족,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로 조사되었다.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약 8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방학 또는 시기와 상관없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선호한다고 조사되었다. 교사의 89.3%가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시기와 상관없이 또는 학기 중에 온라인교육을 선호한다고 조사되었다.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은 공중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권법 제25조, 제29조, 제31조 등 업무와 관련된 규정 중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영상자료를 사용할 때, 저작물을 새로운 매체로 전환하여 사용할 때, 독후활동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외부에 전시하는 경우 등과 같은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저작권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자료의 관리와 자료의 복사 및 대출, 영상자료 상영, 매체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지도 및 독서교육, 협력수업 등 다른 관중의 도서관 담당자와는 달리 학교의 교육과정을 직접 또는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 전문교육은 방학 중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과반수 정도가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향후 대학(원)에서의 문헌정보학 전공자 대상의 교육과정에 저작권 관련 교육 내용을 확대하면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 인지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작권 안내 정보원 개발에 있어서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이 도서관 이용자에게 저작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 학교도서관 담당자 대상의 저작권 인지도 조사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였던 내용,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내용, 교사의 저작권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 저작권법 제 31조와 관련된 내용 등의 학교도서관의 업무와 관련된 저작권 매뉴얼을 개발해야 된다. 또한 자유롭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저작권 자료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은 저작권 관련 고민이 생겼을 때 인터넷을 통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의 연구결과로 학교도서관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 및 연수의 기회 확대와 학교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책자 및 사례집의 개발 등을 통한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경순, 이철현. (2009).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저작권 소양에 미치는 효과」. 『실과교육연구』, 15(2), 181~202.
- 김규희. (2006). 「신문사 뉴스저작물에 관한 기자들의 저작권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언론정보학과.
- 김덕정. (2011). 「저작권 교육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과.
- 김동혁. (2006). 「출판물의 불법복제와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대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저널리즘학과 출판잡지전공.
- 김인자. (2004). 「사적복제보상금제도와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대학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 김자미, 박정호, 이원규. (2011). 초등교사의 저작권 지식수준 분석을 통한 교육정보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정보교육학회 논문지」, 15(2), 241-251.
- 김혜진. (2011). 「청소년 저작권 교육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저작권 교육지정 학교와 일반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 구정화. (2007). 저작권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와 태도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 논총」, 27(2), 41~59.
- 송보명. (2010). 「일반계 고등학교와 미디어고등학교 학생들의 비교를 통한 저작권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송학과.

- 유양근. (2008).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저작권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리정보학회지」. 39(1), 355-375.
- 윤성로 외. (2008).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법의 적용에 대한 연구」. 사대
도협 연구보고서 제 8호.
- 윤세라. (2010). 「초등학교 학생의 저작권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저작권인식
도 연구-서울시 도봉구 A, B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대
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 교육전공.
- 윤선영. (2002). 도서관 정보전문직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관리연
구」. 33(3), 27-43.
- 이수진. (2007). 「공공도서관 사서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이진숙. (2004). 「도서관에서의 저작권법 적용에 관한 집단 간 인식의 비교분
석-디지털 원문 자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
원 문헌정보학과.
- 이정미, 전석주. (2010). 역할놀이를 활용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2010년
한국정보교육학회 학술논문집」, 1(1), 67-73.
- 이민화. (2006). 「학교도서관의 저작권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분당지역 초등
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
공.
- 이찬원. (2011). 「초등학교 영재와 저작권 연구학교, 일반학교 학생들의 저작권지식
정도 와 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영
재교육전공.
- 조은혜. (2010). 「저작권 인식과 학술정보의 오픈 액세스에 관한연구」. 석사
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저작권전공.
- 조희경. (2011). 「저작권 및 저작권 교육에 관한 초등학생의 인식조사」. 석사

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전지영. (2010). 「참여형 저작권 교육이 저작권 의식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홍재현, 정경희, 이호신. (2005).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 개발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6(1), 505-503.

홍재현. (2007).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8(1), 397-421.

2. 단행본

- 곽덕훈. (2008).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이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작권위원회.
- 노영희 외. (2012). 『2011한국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서울: 조은글터
- 송기호. (2006). 『학교도서관 교육의 실제』. 한국도서관 협회.
- 이병기. (2008). 『학교도서관 경영 통론』. 경기도: 조은글터.
- 이성애 외. (2003). 『학교도서관 운영의 첫걸음』. 대구: 태일사.
- 오승종. (2012).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 천세영. (2010). 『쉽게 익히는 이야기 속 학교 저작권-교육정보 활용을 위한 저작권 상담 사례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저작권위원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 지침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홍재현. (2011). 『도서관과 저작권법』. 서울: 조은글터.

3. 웹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자: 2013-6-5. <http://www.law.go.kr>

교육과학기술부. 검색일자: 2013-5-20. <http://www.mest.go.kr>

문화체육관광부. 검색일자: 2013-5-25. <http://www.mcst.go.kr>

서울시교육청. 검색일자: 2013-5-20. <http://www.sen.go.kr>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검색일자: 2013-5-20. <http://www.ben.go.kr>

학도넷. 검색일자: 2013-6-10. <http://www.hakdo.net>

한국도서관협회. 검색일자: 2013-4-22. <http://www.kla.kr>

한국저작권위원회. 검색일자: 2013-6-1. <http://copyright.or.kr>

한국정보화진흥원. 검색일자: 2013-6-1. <http://nia.or.kr>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우선 귀중한 시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초등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을 위한 것이며 선생님께서 답변해주시는 내용은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고,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 4~5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지도교수: 정경희 교수님

연구자: 백연주

연락처: 010-4615-5153

이메일: yj041800@nate.com

*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7가지의 저작권(즉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다면 ①번에 모르고 계셨다면 ②번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① 알고 있음	② 모르고 있음
1	복제권은 복사기 혹은 스캐너 등으로 복제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2	공연권은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상연, 연주하거나 DVD를 상영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3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4	전시권은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품을 전시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5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작품을 번역, 편곡, 변형 등의 방식으로 재작성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6	위와 같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u>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u>		
7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교육목적이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u>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u>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선생님께서 아래 사항을 경험하셨다면 ①번에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②번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① 경험있음	② 경험없음
1	도서관에서 사서가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다.		
2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가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다.		
3	도서관에서 유료강사가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적이 있다.		
4	도서관에서 문화 활동으로 영화를 틀어준 적이 있다.		
5	교사/학생에게 도서관 소장 자료의 일부분을 복사해 준 적이 있다.		
6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보존용으로 1부 전체를 복사한 적이 있다.		
7	다른 도서관의 사서(교사)에게 우리 도서관에만 있는 도서를 1부 복사해준 적이 있다.		
8	도서관내의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9	도서관내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국회도서관 등에서 디지털로 올려 놓은 자료를 출력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10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 e-book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료를 다시 디지털로 만들어 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11	교사에게 중간 및 기말시험(단원평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 수필 등을 복제해준 적이 있다.		
12	도서관 이용자를 위하여 서평자료를 제작한 적이 있다.		

* 다음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아래 사항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다면 ①번, 모르고 계셨다면 ②번에 표시해주세요.

문 항		① 알고 있음	② 모르고 있음
1	교사는 수업에 필요할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사하거나 이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2	교사는 수업에 필요할 경우 DVD등과 같은 영상자료를 발행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여줄 수 있다.		
3	교사는 수업에 필요할 경우 자료의 일부분만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4	교사는 수업에 필요할 경우 시나 그림, 사진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5	학생은 수업에 필요할 경우 자료의 일부분만을 복사할 수 있다.		
6	학생이 수업에 필요할 경우 (예컨대 발표에 필요한 자료)자료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7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된다.		
8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9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된다.		

- 88 -

12. 저작권 교육 및 연수를 어떤 기관에서 받고 싶습니까?

- 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저작권전문기관 ②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사서교육기관
③ 학도넷 등의 학교도서관 관련 기관 ④ 기타 ()

13.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도서관과 저작권과는 상관이 없어보여서
- ② 학교도서관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상관없이 저작물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서
- ③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업무가 늘어날 것 같아서
- ④ 기타 ()

14. 선생님께서는 교사대상으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5~16번으로 이동) ② 없다 (17번으로 이동)

15. 저작권 교육을 해본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 ① 교사가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질문하면 안내한다.
- ② 교사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먼저 안내한다.
- ③ 저작권 안내 자료를 만들어서 나누어 준다.
- ④ 기타()

16. 교사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① 학교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책자가 부족해서 안내에 어려움을 느낀다.
 ② 스스로 저작권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③ 교육할 시간이 부족하다. ④ 교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⑤ 기타 ()

17. 선생님께서 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안내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 ② 교사의 지식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느끼기 때문에
- ③ 스스로 저작권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 ④ 사서업무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 ⑤ 기타 (.)

18. 선생님께서는 학생대상으로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19~20번 문항으로 이동) ② 없다 (21번 문항으로 이동)

19. 저작권 교육을 해 본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① 학교도서관 이용자교육시간
- ② 도서관에서 평상시에
- ③ 교사의 요청에 의한 수업을 통해서
- ④ 기타 ()

20.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① 학교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안내책자가 부족하다.
- ② 스스로 저작권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 ③ 교육에 활용할 저작권 수업교안이 없다
- ④ 업무로 인해서 안내할 시간이 부족하다.
- ⑤ 기타 ()

21. 선생님께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안내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 ② 학생들이 저작권에 관한 내용을 어려워 할 것 같아서
- ③ 체계적인 교육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 ④ 업무로 인해서 안내할 시간이 부족해서
- ⑤ 기타 ()

22. 학교도서관서비스와 저작권과 관련하여 사서(교사)분들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써 주세요.

* 다음은 선생님의 대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 표시를 하세요.

1.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 ② 여

2.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50대 이상

3. 선생님의 지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사서교사 ② 정사서 ③ 준사서 ④ 행정직원 ⑤기타 ()

4. 선생님의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5. 선생님의 학교도서관 근무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5년 이하 ② 5~10년 이하 ③ 10~15년 이하 ④ 15년 이상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우선 귀중한 시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초등학교도서관 사서(교사)의 저작권 인식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을 위한 것이며 선생님께서 답변해주시는 내용은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고,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 4~5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지도교수: 정경희 교수님

연구자: 백연주

연락처: 010-4615-5153

이메일: yj041800@nate.com

*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7가지의 저작권(즉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다면 ①번에 모르고 계셨다면 ②번에 V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① 알고 있음	② 모르고 있음
1	복제권은 복사기 혹은 스캐너 등으로 복제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2	공연권은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물을 상연, 연주하거나 DVD를 상영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3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4	전시권은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품을 전시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5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작품을 번역, 편곡, 변형 등의 방식으로 재작성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6	위와 같이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u>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u>		
7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교육목적이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u>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u>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 선생님께서 아래 사항을 경험하셨다면 ①번에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②번에 V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① 경험있음	② 경험없음
1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있다.		
2	교실에서 영화를 틀어준 적이 있다.		
3	수업시간에 사용했던 자료의 일부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4	학생이 수업시간에 사용하기 위해 자료의 일부분을 복사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5	학생이 수업시간에 사용하기 위해 (예컨대 발표에 필요한 자료) 자료의 일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본적이 있다.		
6	교실에서 동화책을 학생들에게 읽어준 적이 있다.		
7	DVD등과 같은 영상자료를 발행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여준 적이 있다.		
8	도서관사서에게 수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줄 것을 부탁한 적이 있다.		
9	도서관내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국회도서관 등에서 디지털로 올려 놓은 자료를 출력하여 사용한 적이 있다.		
10	중간 및 기말시험(단원평가)에 사용하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 수필 등을 복제한 적이 있다.		

* 다음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다면 ①번에 모르고 계셨다면 ②번에 V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① 알고 있음	② 모르고 있음
1	교사는 수업에 필요할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2	교사는 수업에 필요할 경우 교실에서 영화를 틀어줄 수 있다.		
3	교사는 수업에 필요할 경우 자료의 일부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4	학생은 수업에 필요할 경우 자료의 일부분을 복사할 수 있다.		
5	학생이 수업에 필요할 경우(예컨대 발표에 필요한 자료) 자료의 일부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다.		
6	교실에서 그림책을 학생들에게 읽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된다.		
7	선생님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줄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다.		
8	교사는 수업에 필요할 경우 DVD등과 같은 영상자료를 발행시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여줄 수 있다.		
9	도서관사서는 교사와 학생을 위하여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일부분을 한 사람당 1부만 복사하여 줄 수 있다.		
10	교사는 도서관내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국회도서관 등에서 디지털로 올려놓은 자료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때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11	교사는 중간 및 기말시험(단원평가)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사진, 수필 등을 복제할 수 있다.		
12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94 -

ABSTRACT

A Study on the Raised Recognition of Copyright among Elementary School Library Staffs

– With a focus on author's property right –

Back, Youn-ju

Major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author's property right and its limitation provisions and the current state of copyright education among the staffs of elementary school libraries to help to increase their recognition of copyright and expand their opportunities to receive copyright education and in-service training. The investigator first examined the concept and concerned provisions of author's property right through literature study with a focus on author's property right and administered a questionnaire to figure out the recognition of copyright among the staffs of elementary school libraries.

The survey was taken with the library staffs and teachers at 156 elementary schools designated as School to Receive Special Supports for Education Welfare in 2013 in Seoul.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our major sections including the recognition of author's property right and its

limitation provisions, experience with school library service related to author's property right, and copyright education.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school library staffs had good knowledge of right to reproduction, public performance, and exhibition of the author's property rights, while the teachers were well aware of right to public performance and exhibition. Both the groups had no solid knowledge about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and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The teachers recorded a lower recognition level of right to reproduction than the school library staffs. Many respondents in both the groups said that fairy tale storytelling would be possible without permission from the author with regard to Article 29 of the Copyright Act, but they did not know that fairy tale storytelling falls in the category of public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copyright law. Both the groups had vague ideas about the content of digital data handling and compensation money provision with regard to Article 31. As for work experiences related to copyright, the school library staffs had many experiences with librarian works, volunteer workers' fairy tale storytelling, and movie screening at the library with regard to Article 29, whereas the teachers had plenty of experiences with movie screening, partial duplication and distribution of works, and fairy tale storytelling with regard to Article 25 and 29. As for copyright education, the school library staffs learned about the content of copyright during copyright classes in college(graduate school), whereas the teachers did through education and in-service training.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help

to increase the recognition of copyright among school library staffs:

First, copyright education targeting school library staffs should be centered around the parts that they are not familiar with among the provisions related to right of public transmission,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and Article 25, 29, and 31 of Copyright Act. In addition, copyright education should also address occasions when they use video materials downloaded at the Internet, convert works into a new medium and use them, or post the results of after-reading activities on the homepage or exhibit them outside the school.

Secondly, there should be professional copyright education for school library staffs because they not only provide both students and teachers with a variety of service including the management of information, duplication and lending of materials, screening of video materials, and media production to support their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but they also participate in the school curriculum including guidance on library service use, reading education, and collaborative lessons on their own or in cooperation with others unlike the library staffs at other types of institutions. It will be a proper approach to provide school library staffs with professional copyright education online during vacations. A majority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learned about copyright via the curriculum in college(graduate school), which means that the recognition of copyright will increase among school library staffs if the educational content about copyright is expanded in the curriculum for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ajors in college(graduate school).

Finally, it is required to develop a copyright manual related to the works of school library including the content related the frequent works at a school library, the content whose recognition level was low in the copyright recognition survey among school library staffs, the content that they are worried about in relation to copyright, the content to support the teachers' works related to copyright, and the content related to Article 31 of Copyright Act in the development of copyright guidance and information sources so that school library staffs can offer guidance on copyright to library users. There is also a need for a website of copyright materials where they can search copyright-related content freely, considering the finding that they used the Internet the most to search for answers when they had worries in regard to copyright.

The findings will hopefully lead to expanding opportunities of copyright education and in-service training for school library staffs and developing copyright booklets and casebooks related to school library service, thus contributing to the raised recognition level of copyright among them.

【Keywords】 elementary school library, author's property right, copyright education for school librarians, copyright education, elementary school library staffs